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#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옥규 의원 등 8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1년 8월 25일
- 회부일자 : 2021년 8월 27일

3. 제안이유

- 인용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인용법령 명칭을 개정하고,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며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인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개정에 따른 규정 삭제(안 제5조제8호)
  - “「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규정」은 “「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」”으로,
- 인용법령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(안 제5조제4호)
  - 「충청북도 관용차량 관리규칙」 → 「충청북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」

- 인용법령 제목 띄어쓰기(안 제5조제8호)
  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→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
- 약칭 사용(안 제2조제3항)
  - 도지사 →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
  - 아니한다 → 않는다
  - 것을 제외하고 → 것 외에

## 5. 검토의견

- 이번 개정조례안은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개정에 따른 규정을 삭제하고, 인용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명칭 개정과 어려운 법령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것으로 이에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 - 안 제5조제8호
    - “「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규정」은 “「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」”으로 부분을 관련 법령인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개정으로 삭제하였고,
  - 안 제5조제4호
    - 「충청북도 관용차량 관리규칙」 → 「충청북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」 인용법령 명칭 변경으로 개정하였으며,
  - 기타 제목 띄어쓰기, 약칭사용, 알기 쉬운 법령정비

기준에 따른 용어정비

- 안 제5조제8호에서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→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,
- 안 제2조제3항에서 도지사 →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
- 그밖에 아니한다 → 않는다, 것을 제외하고 → 것 외에 등으로 수정하여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음.

붙임: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